

「남양주시-IBK기업은행」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계획 공고(2차)

「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」에 따라 남양주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2일

남 양 주 시 장

1. 지원개요

- 용자규모 : 66억 7천만원(수시 접수)
- 지원내용

용자규모 (운전자금)	용자기간	기업당 용자 한도액	IBK기업은행	시
			보증 수수료 지원	이자 지원
6,670백만원	1년 이내(대출기간 포함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	3억원	1.2%	2%

○ 지원대상
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·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㎡미만 이고 「건축법」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, 근린생활시설,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※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상표권 및 OEM 계약서 보유 시 가능 -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[참고]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건축법」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, 근린생활시설,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- 비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본사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합법적 용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· *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 이상 도소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신청일 직전 1개월의 상시근로자 수,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· 건설업 ※ 종합건설업 제외 · 자동차(중합·소형)정비업, 자동차해체재활용업 - 반도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
------	--

○ 지원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중인 업체
- 본사 또는 사업장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

2. 지원절차

① 사업공고 남양주시	⇒	② 용자상담 중소기업 → 기업은행	⇒	③ 보증상담 중소기업 → 보증기관
④ 동행지원 협약대출 신청 중소기업 → 남양주시	⇒	⑤ 지원결정 통보 남양주시 → 중소기업	⇒	⑥ 보증 및 용자실행 중소기업 → 보증기관 중소기업 → 기업은행

- ④ 동행지원 협약대출 신청 : 상담 확인필증 지참(기업은행 교부)
- ⑤ 지원결정 통보 :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
- ⑥ 보증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/ 기업은행 : 전국 영업점

3. 신청방법

- 신청 및 접수기간 : **2024. 12. 2.(월) ~ 자금 소진 시까지(수시 접수)**
 - 방 문 :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지역경제과(경춘로 1037)
 - 이메일 : hagil2345@korea.kr ※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
- 구비서류 : 공통서류(필수) + 해당서류(업종별)

구 분	제 출 서 류
공통서류 (필수)	① 신청서(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이행확약서 포함) 각 1부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에 한함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직전년도)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건축물대장(본사, 사업장) 1부
해당서류 (업종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제조업) 공장등록증(공장미등록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1부) · (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) 업종 증빙자료(형식 무관), 건축물대장 1부 · (건설업) 건설업등록증, 건축물관리대장 1부 ※ 종합건설업 : 지원대상 제외 · (자동차관리사업) 자동차관리사업증, 건축물관리대장 1부 · (도소매업) 상시근로자 5인 이상(최근 6개월), 매출액 15억원 이상 증빙서류,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증빙 가능한 서류(최근 6개월) - 매출액 :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직전년도)

4. 유의 사항

- 동행지원 협약대출 신청 전,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용자상담 받아야 합니다.
- 시의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 용자실행 하여야 합니다.
- 동 자금 지원결정 업체는 IBK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은행 규정에 따라 용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기업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요구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.
- 대출 후 폐업 또는 타 시·군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이후의 이자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됩니다.(사유 발생 시 취급기업 및 기업은행은 시에 즉시 통보)

5. 접수 및 기타사항

- 용자 한도 소진 시, 공고·접수 마감합니다.
- 접수 마감 후, 용자 조기 상환 등 용자 한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접수 예비자 순서에 따라 추천합니다.